

제 837 호
81. 5. 12

발행인: 서울특별시청 박 영 수
편집: 문화공보관 김 진 호
전화 75-7834
인쇄: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
전화 75-6090

시 보

차 례

○	고	시	
제 159	호:	도시계획시설 (수도) 변경결정및지적승인	3
제 160	호:	도시계획시설 (학교) 지적고시	3
제 161	호:	도시계획시설 (학교) 결정및변경	4
제 162	호:	도시계획시설 (공공공지) 신설결정및지적승인	4
제 164	호:	도시계획시설 (운동장) 지적승인	5
제 167	호:	서울도시계획시설 (공원) 지적승인	5
제 168	호:	서울특별시가정의례식장등의임대료수수료등의 최소한도액고시	6
제 169	호:	도시계획시설 (학교) 지적승인	8
제 170	호:	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허가	9

<이면계속>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서울특별시

1507

◎	공	고	
	제 124 호 :	도시계획시설 (지하도로상가점용) 실시계획공람공고	11
	제 126 호 :	청개천 7 가구역제 3, 5 지구재개발사업완료공고	11
	제 127 호 :	K 8 표시점지처분공고	12
	제 128 호 :	K 8 표시점지처분공고	12
	제 130 호 :	도시계획시설 (경남국교진입로포장공사) 실시계획공람공고	13
	제 131 호 :	전기용품제조업허가취소	13
	제 132 호 :	분노특별수거지역외제외 (비수거) 지역공고	14
	제 133 호 :	도시공원시설 (정구장) 관리위탁	14
	제 134 호 :	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재정자금운용요강및 집행요령개정공고	15
	제 135 호 :	공인개작사용승인공고	16
	제 136 호 :	전기용품제조업허가취소	16
	제 46 호 (동작구공고) :	시장폐지공고	17

◎	인	규	
	제 409 호 :	서울특별시시가지계획사업,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금과징및교부사무취급요령개정	17

◎ 사 령

고 시

○ 서울특별시고시제 159 호

도시계획시설(수도)
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고시제 90 호(81.3.30)로 도시계획시설(수도) 결정 및 지적승인된바 있는 관내 강남구 방배동 산 48 의 12 부근에 대하여 해

당지번 착오가 있었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동법제 13 조와 건설부 고시 제 463 호(79.12.10)의 관한 위임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 2 과의 관할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1.5.

서울특별시장

시 설 조 서

구분	시설명	위 치	면적	비 고
기정	수 도	강남구 방배동 산 48 의 12 부근	400 ㎡	해당지번착오로 인한
변경	"	" 산 34 의 12 부근	"	정정고시(도면변경 없음)

*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(도면생략)

○ 서울특별시고시제 160 호

도시계획시설(학교) 지적고시

1. 서울특별시고시제 59 호(81.3.5)로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(학교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 조

및 건설부고시제 463 호(79.12.10)의 관한 위임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용산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1.5.

서울특별시장

가. 도시계획시설(학교) 지적고시 조서

구분	시 설 명	위 치	면 적	비 고
신 설	담정국민학교 원효분교	용산구 산천동 산 4-2 일대	7,207 ㎡ (2,180 평)	

나. 고시도면: 별첨(생략)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161 호
 도시계획시설(학교) 결정및변경

1. 당시 도시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(학교)을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건설부고시 제463호(79.12.10) 권한위임사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 및 변경하였기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1과와 도봉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1.5.6
 서울특별시장

가. 도시계획시설(학교) 결정 및 변경조서

구분	시설명	위치	면적	비고
신설	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	도봉구 하계동 78 일대	132,230㎡ (40,000평)	
기정	청암고등공민학교	" 증계동 411-5 일대	5,669㎡ (1,715평)	
변경	청암고등기술학교	" 증계동 411-2 일대	7,141㎡ (2,160평)	중 445평
기정	선덕학원	" 우이동 103-1 일대	29,785㎡ (9,010평)	
변경	"	" 우이동 103-1 일대	31,975㎡ (9,582평)	중 572평

나. 결정 및 변경도면 : 별첨(생략)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162 호
 도시계획시설(공공공지) 신설결정 및 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(공공공지)을 다음과 같이 신설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와 건설부고시제 463 호 가. 시설결정조서 (79.12.10) 의 권한위임사항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1과 및 도봉구청 도시정비과와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인다.

1981.5.6
 서울특별시장

구분	시설명	위치	면적	비고
신설	공공공지	도봉구 상계동 75-1 일대	427㎡ (1.29평)	

나. 지적승인조서 : 별첨

다. 신설결정 및 지적승인도면 :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(생략).

○ 지적승인조서				
위	치	지	면	비
구	분	역	적	고
도	상	전	49	
봉	계	대	50	
구	등	"	143	
	75-1	"	104	
	75-2	"	56	
	75-14	"	15	
	75-7	"	8	
	75-8	"	1	
	75-12	"	1	
	75-13	"		
	75-3	"		
	75-24	"		
계			427	(129경)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164 호

도시계획시설(운동장) 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(운동장)을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조 및 건설부고시 제 463호(79.12.10)의 권한위임

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.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2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1.5.7
서울특별시장

○ 시설조서(지적승인)

구분	시설명	위	치	면	비
신	선	구	분	적	고
신	선	운	동	2,607,000	
		장	동		
			525부		
			근		

*별첨 도면표시와 같음(도면생략)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167 호

서울도시계획시설(공원) 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(공원) 중 81.4.29자 건설부고시제 140호 동고시제 141호, 동고시제 144호 및 동고시제 145호로 신설 및 변경결정된 도시계획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조 제 2항의 규정 및 건설부고시

제 463호(79.12.10)권한위임사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였기 동법제 13조제 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.
2. 도시계획지적승인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 1과와 관할구청 및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인다.

1981.5.8
서울특별시장

가. 도시계획시설(공원) 지적승인조서						
구분	공원번호	공원의종류	공원명	위치	면적(㎡)	비고
변경	1	자연공원	남산공원	종구 강릉, 예장동 일대	기정 2,251,597 변경(증) 8,233 변경후 2,259,830	
"	근01-05	근린공원	창덕공원	종로구 외룡동	기정 465,010 변경 465,010	도면 정정임.
"	근12-21	"	서초공원	강남구 반포동	기정 602,100 변경 602,100	반포동 577-55일대에 대한 도면정정임.
신설	근11-11	"	동작공원	동작구 동작동 326	42,220	신설
"	근12-23	"	반포공원	강남구 반포동 299-1	25,012	신설

나. 지적승인도면 : 별첨 (생략)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168 호

서울특별시 가정의례식장등의 임대료
수수료등의 최고한도액 고시

1.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제 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내 의례식장에서 취급할 임대료, 수수료등

1. 최고한도액을 아래와 같이 고시한다.

2. 의례식장에서는 그 이용자에 대하여 아래 고시된 의례식장 부대시설등의 사용 또는 이용을 강요할 수 없다.

1981.5
서울특별시

서울특별시 가정의례식장등의 임대료수수료등의 최고한도액

가. 결혼예식장 임대료 수수료등의 최고한도액

구분	종류	규격 또는 기준	최고한도액
임대료	식장비	단위시간당	석당 400 원, 최고 60,000 원
	드레스	부대품일체 및 신부꽃다발포함	60,000 원
	패백실	단위시간당 부대품(의복등) 일체포함	15,000 원
수수료	사 전	칼라 8" × 10" 1조 3매당	21,000 원
	미 용	예식전후 신부화장	21,000 원

구분	종 류	규 격 또 는 기 준	최 고 한 도 액
판매물품	피 아 노		6,000 원
	녹 음		3,000 원
	스 텔 사 진	3"X4" 20매 (앨범포함)	15,000 원
	기타부대용품	장갑 4족, 생화 7개 (꽃바구니포함) 성혼선언문 혼인서약서 } 케이스포함 방명록 2권 축지 및 기타용품	20,000 원
나. 결혼상당소 수수료 최고한도액			
구분	종 류	규 격 또 는 기 준	최 고 한 도 액
수수료	상 담 소	상담료	5,000 원
	추 진 료	성혼추진비	45,000 원
	사 래 금	성혼 1쌍당	100,000 원
다. 장례식장임대료수수료등의 최고한도액			
구분	종 류	규 격 또 는 기 준	최 고 한 도 액
임대료	식 장 비	단위시간당	석당 450원, 최고 60,000원
	안 치 료	독실 (1일 24시간기준)	5,000 원
		합실 (1일 24시간기준)	2,000 원
라. 장의사임대료수수료등의 최고한도액			
구분	종 류	규 격 또 는 기 준	최 고 한 도 액
임대료	병 향 쫓 조 천	부 로	4,000 원
		1 개	1,000 원
		2 개	1,000 원
		1 개 (상가표시 10매포함)	1,000 원
수수료	염 습 비		3,500 원
		1 건당	50,000 원

구분	종 류	규 격 또 는 기 준	최 고 한 도 액 (원)
판매물품	판	1 치무절	100,000
	수 의	삼대증품평수의	120,000
	칠 성 판		2,000
	결 관 바		2,500
	습 사		2,000
	땀 배		30,000
	명 정		10,000
	면모, 악수	3 종 (면모, 악수, 입가리개) 1 조	2,500
	횡 대	1 치 X 70 센치 X 30 센치 X 7 개	20,000
	예 단	2 개 1 조	3,000
	집 신	3 주 1 조	600
	한 지	1 권 (10 매)	1,200
	초 석		4,000
	만 수 향	1 갑 (500 개)	2,000
	양 초	계례용 2 개 1 조	600
	발 칩 대		1,000
	탈 지 면		200
	위 패		3,000
	탈 취 계		300
	벼 개		1,000
사 진 리 본		1,000	
관 보		10,000	
두 견		1,000	
완 장		300	
리 본		300	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169 호

도시계획시설 (학교) 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(학교) 을

다음과 같이 지적승인 하였기
 도시계획법 제 13 조의 규정과
 건설부고시제 463 호 (79.12.10) 원
 한 위임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
 한다.

2. 관계도서는 강서구청 도시정비
과와,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
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
인다.
1981. 5 . 12
서울 특별시 장

도시계획시설 (학교) 지적승인조서

구분	시설명	위치	면적	비고
신설	명신여자상업 전수학교	강서구신정동산 109-1 일부	8,443㎡	

별첨 도면표시와갈음 (도면생략)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170 호

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허가

1. 서울특별시고시제 1 호 (81.1.5) 및
동고시 제 46 호 (81.2.19) 로 시설
결정 및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시설
(학교) 용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
제 24 조 및 전설부고시 제 463 호
(79.12.10) 에 의거 도면제화사업
(학교) 시행을 허가하고 이를 고시한다.
2. 관계도서는 강동구청도시정비과 및
시민봉사실과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
관리국시설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
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1. 5. 12.

서울 특별시 장

- 가. 사업시행지 : 서울특별시강동구
거여동 137 번지의 20 필지
- 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종류 : 도시계획사업 (학교)
명칭 : 서울장지국민학교
- 다. 사업의 규모 및 면적 :
12,794 ㎡ (3870 평)
- 라.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
1 - 163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장
- 마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
착수 : 시행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
준공 : 착공일로부터 2년 이내
- 바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,
지번, 지목, 지적 및 소유권여부의
관리명세 : 별첨 (토지조서)
- 사. 시행허가설계도서 : 별첨 (생략)

토지소유자와토지수용법제 4조 3항의 규정에 의한관계인의 주소, 성명

학교명	소재지		지목	지적	소유자		이해관계인
	동명	지번			주소	성명	
서울 관지국 민학교	강동구	137	전	2,393	거여동 163	이순우	없음
	거여동	136-35	대	50	거여동 136-14	유남수	"
		-14	"	402	"	"	"
		-15	"	201	"	"	"
		-33	"	1,709	"	"	"
		139-1	"	1,718	거여동 193	이덕윤	"
		138-6	"	2,085	거여동 42	김예신	"
		-2	답	595	토지대장 미부구	"	"
		139-2	"	804	거여동 193	이덕윤	"
		166-1	"	2,300중 304	토지대장 미부구	"	"
		165	"	403 중 45	거여동 351-4	권영길	"
		164	"	3,834중 6	"	"	"
		140-2	도로	17	서울특별시	"	"
		-1	구거	681	"	"	"
		-3	답	285	동교동 179-80	이종울	"
		-4	"	728 중 286	"	"	"
		141-3	"	1,819중 134	신당동 366-74	홍순호외 3인	"
		141-4	"	335 중 18	미부구	"	"
		140	"	333 중 182	동교동 179-2	이종울	"
141-2	"	12 중 9	신당동 366-74	홍순호외 3인	"		
172-1	도로	870	서울특별시	"	"		
		계		12,774 평			

공 고

○서울특별시 공고 제124호

도시계획시설 (지하도로 상가결용)
실시계획 공람공고

1. 서울시 고시 제71호 (81.3.14) 로 도시계획시설 (지하도로) 결정 및 지적승인된 영등포3가 지하도 (상가결용) 의 도시계획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조 2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 부터 14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한다.
 2. 관계도서는 영등포구청 건설관리과에 비치하고 인근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행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
- 가. 공고장소 : 영등포구청 게시판
나. 공고기간 : 1981.5.6 - 1981.5.19.

1981. 5.

서울특별시장

- 1) 사업장위치 : 영등포구 영등포3가 (영등포역앞 - 영등포시장 로타리간)
- 2) 사업의종류및명칭 : 영등포3가 지하도 (상가결용) 시설공사
- 3) 사업의규모 : 지하도 B=18.30미터 I=240미터, A=6,124 (1,853평)

(동로면적660평, 상가면적618평, 출입구면적110평, 부대시설 465평)

- 4) 사업의 시행자 : 서울특별시장
- 5) 사업의착수 및 준공예정 : 인가일 - 82.12.31.
- 6) 사용 및 수용할토지 : 없음.

○서울특별시 공고 제126호

청계천 7가구역 제3, 5지구
재개발사업 완료 공고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86호 (78.3.9) 로 재개발사업실시 제외인가된 청계천 7가구역 제3, 5지구 재개발사업이 완료 되었기 도시재개발법 제 48조 제 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한다.

1981. 5. 6.

서울특별시장

다 음

- 가. 사업시행지 : 중구신당동 217-39 외 26필지일대
- 나. 사업명칭 : 청계천 7가구역 제3, 5지구 재개발사업
- 다. 사업시행인가 년월일 및 번호 : 1978. 3. 9. (서울특별시고시 제86호)

라. 시행자주소, 성명

- 1) 서울특별시중구 신당동 217-67번지
- 2) 성명 : 정재천 7가구역제 3,5지구
제개발조합장 김 한 주

마. 준공면적

- 1) 토지 : 대 지 3,302㎡
도로(공방용지) 1,117.7㎡
 제 4,119.7㎡
- 2) 건물면적 : 9,161.85㎡
 신 축 7,524.72㎡
 존 치 1,637.13㎡

바. 준공내역 : 준공내역조서 및 확정
측량성곽도 참조
(서울특별시 제개발1과 비치)

㉠서울특별시 공고 제127호

KS 표시 정지처분 공고

공업표준화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
다음과같이 KS (한국공업규격) 표시
정지처분하였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
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한다.

1981. 5. .

서울특별시장

- 1. 허가번호 1102
- 2. 허가일자 75.5.21.

3. 제조업체명 정화금속(주)

- 4. 대표자 최진수
- 5. 소재지 강서구 영창동 48-15
- 6. 품 목 원통형 도어로크 20 2
- 7. 규격번호 KS B 6411
- 8. 처분기간 공고일로부터 3개월
- 9. 처분사유 KS 규격미달

㉡서울특별시 공고 제128호

KS 표시 정지 처분 공고

공업표준화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
다음과같이 KS 표시 정지 처분하였기
동법 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따라 이
이를 공고한다.

1981. 5. 6.

서울특별시장

- 업체명 협우산업
- 소재지 서울은정구 용암동 61-21
- 대표자 최 규 순
- 허가번호 2006 (80.2.21)
- 품 명 사무용품 확일 (KSG2402)
- 종류및등급 1종 2호, 2종 2호
- 처분기간 공고일로부터 3개월
- 처분사유 KS 규격 기준미달

부칙: 이 공고는 공고일로부터 반효한다.

○서울특별시 공고 제130호

도시계획시설 (제남국교 진입로 포장공사) 실시 계획 공람공고

1981. 5

서울특별시 장 박 영 수 관

공람개요

1. 사업시행지 : 서울특별시 강서구 신정동 223-11
" 222-4

2. 사업의 종류와 명칭 : 도시계획사업 (제남국교 진입로 포장공사)

3. 사업의 규모 (면적) : 44㎡ (13.3坪)

4. 사업의 시행자 : 강서구청

5. 사업기간 : 1981. . . -1981.6.30

6. 사용 또는 수용할토지

도시계획시설 (제남국교 진입로 포장공사) 실시 계획 공람공고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362호 (77. 10.18)로 시설결정 및 지적공인권 (8보계획선) 신정동 223의11번지의 1필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(시행인가)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하고자 이에 공함

2. 토지 소유자에게는 개별 통지하고 관계도서는 강서구 건설관리과

연번	토지소재지	지목	지적	주소	성명
1	강서구신정동 223-11	전	21㎡	강서구신정동 188-6	임정원
2	" 222-4	전	23㎡	구로구고척동 215	남정섭
계			44㎡		

관계도면 : 별첨생략

○서울특별시 공고 제131호

전기용품 제조업 허가취소

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제3호에 의거 전기용품 제조업 허가를 취소하고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.

1981. 5. 7.

서울특별시 장

-다 음-

업 체 명	소 재 지	대표자	허가번호	제 조 구 분	위 소 사 유
동남전기산업사	성수2가 301-27	김준수	1-5-21	소형단상 변압기전입 조정기및 방전동용 안정기	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제5호
서울전기공업	성수1가 149-4	안인숙	1-5-12	" "	" "

○서울특별시 공고 제 132호

분노특별수거지역의 제외
(비수거)지역 공고

오물청소법 제3조1항의 단서 규

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특별 청소
지역에서 제외(비수거)되는 분노
비수거 지역을 지정하고 이를 다음
과같이 공고한다.

1981. 5.

서울특별시 장

구 별	동 명	제 외 지 역	통 명
강 남	인 원 동	전 지역	
	내 곡 동	일부지역 (18-1)	6 통
	새 곡 동	" (12-6)	7, 8, 9, 10, 11, 12 통
	서 초 동	" (34-1)	26 통
	도 곡 동	" (36-5)	30, 33, 34, 35, 36 통
	대치 2 동	" (31-1)	24 통
강 서	과 해 동	전 지역	

○서울특별시 공고 제 133호

도시공원시설(정구장) 관리위탁

도시공원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
의하여 다음과같이 도시공원 시설을

관리 위탁 하였기 동법제6조제3항
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.

1981. 5.

서울특별시 장

<p>1. 공원의명칭 : 장송공원 2. 면적 : 3,190 평 3. 기간 : 1981.5.1-1981.12.31 4. 수탁자 주소 : 서울특별시중구무교동 19 대한대니스협회 성명 : 회장 이종득 5. 목적 : 정구장관리 6. 위탁시설내용 ○ 정구장 : 8면 ○ 맥보드 : 1면 ○ 관리사무실 : 1동 57.79 평</p>	<p>◎서울특별시공고제 134 호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제정자금 운용요강및집행요령개정공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제정자금운용 요강 및 집행요령을 다음과같이 개정한다. ○ 개정사항 다금 ○ 시행일 이요강및 집행요령은 공고일로부터 시행한다. 1981. 5. 서울특별시 장</p>
<p>개 정 사 항</p>	

구 분	개 정 내 용	
	현	정
서울특별시중 소기업육성제 정자금운용요 강	제 3 조 (용자대상 및 집행절차) ①자금의 용자대상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규정한 중소기업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 하는 자로한다.	제 3 조 (용자대상 및 집행절차) ----- ----- ----- ----- (신설) 단, 영세민에게 우 업을 제공하는등 영세민의 소득증대사업에 기여하는 업 체로서 권한구청장의 추천을 받 은 업체는 '다', '라', '마' 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	제 4 조 (자금의 구분) 이 요 강에 의한 자금은 시설자금 과 운전자금으로 한다.	제 4 조 (자금의 구분) ----- -----자금은 운전자금으로 한다.

구 분	개 정 내 용	
	현 행	정
서울특별시중소 기업육성제정 자금운용요강 등집행요령	제 5 조 (용자조건) 이 자금의 용자조건은 다음과 같다. 1. 대출한도: 15,000,000 원 이내 4. 지원내용 지원한도액: 운전자금 15,000,000 원 이내	제 5 조 (용자조건) 1. 업체당대출한도: 30,000,000 원 이내 4. 지원내용 지원한도액: 30,000,000 원 이내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135 호

공인개작사용승인공고

서울특별시 공인물 아래와 같이 개
작 사용승인하고 관인규정 제 9 조 및
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 9 조에 의거
공고한다.

1981. 5.12

서울특별시 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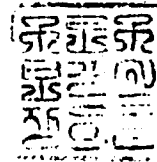
- 1. 공인명: 구로구보건소장의인
- 2. 사용개시일: 1981. 5.13
- 3. 공인의인명: 다음

다

음

인

영



공인명

구로구보건소장의인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136 호

전기용품제조업허가취소

- 1.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 8 조의 규정에
의거 전기용품제조업 허가를 취소하고
동법 제 26 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
같이 이불 공고한다.

1981. 5.12

서울특별시 장

업체명	소재지	대표자	허가번호	제조구분	취소사유
삼양전기 공업사	동작구본동 254-2	박종식	1-6-18	소형교류, 전동기 류제조	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 24 조 1 항위반

◎ 동작구공고제 46 호

시장폐지공고

시장법 제 8 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시장폐지신고를 수리하고 공고함.

1981. 5. 8

동작구청장 김 인 동 ㉞

- 1. 시장명 : 노량진중앙시장
- 2. 개설자 : 영진물산(주) 안중호
- 3. 위치 : 동작구노량진동 119 번지
- 4. 폐지일자 : 1981. 6. 8



◎ 서울특별시예규 409 호

서울특별시시가지계획사업토지구획정리
사업청산금과징및교부사무취급요령개정

서울특별시 시가지계획사업, 토지구

획정리사업 청산금과징 및 교부사무
취급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
한다.

제 9 조 본문중 ' 30 일 내지 60
일의 ' 를 ' 180 일 이내로 ' 하며
단서중 ' 다만, 반응되어 재증달
하는 고지서는 납기 마감 5 일 전
까지 도달되도록 한다 ' 를 삭제
하고 ' 다만, 시장이 특히 필요
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일정한
기간 징수 유예할 수 있으며
납기 또는 납부방법을 따로 정
할 수 있다 ' 로 한다.

부 칙

① 이 규정은 1981년 5월 5일부터
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시가지계획사업, 토지구획정리사업
청산금과징및교부사무취급요령개정대비표

현	행	개	정 (안)
제 9 조 (납부기간)	징수금 납입고지서는 적어도 납기개시 5 일 전에 송달하여야 하며, 30 일 내지 60 일의 납기를 정할 수 있다. 다만, 반응되어 재증달하는 고지서는 납기 마감 5 일 전까지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.	제 9 조 (납부기간)	징수금 납입고지서는 적어도 납기개시 5 일 이전에 송달하여야 하며, 180 일 이내로 납기를 정할 수 있다. 다만,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일정기간 징수 유예할 수 있으며 납기 또는 납부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
사 령

◎ 1981. 4.28

명제 175 호

성 명	발령사항	현 직		
		부 서	직 위	직 급
황 인 철	기획관리관	총 무 처	수습행정관	행정사무관시보
김 종 민	문화공보관	·	·	·
마 진 구	보건사회국	·	·	·
이 준 근	산업국	·	·	·
권 영 규	수백국	·	·	·
신 영 기	환경국	·	·	·
김 용 갑	공원녹지국	·	·	·
전 커 권	민방위국	·	·	·
진 익 철	하수국	·	·	·
이 도 호	내무국	·	·	·
박 성 중	수도국	·	·	·

서울특별시

◎ 1981. 4.30

명제 176 호

총 무 과
별정직 3 을 상당

임 칠 현

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

서울특별시

◎ 1981. 5. 1

명제 170 호

새마을지도과
지방서기관

이 광 우

서기관에 임함. 내무국 새마을지도과장에 보함

대 통 령

◎ 1981. 5. 1

명제 179 호

강동구천호 2 동
지방행정서기

손 문

전라북도 건설을 명함

서울특별시

◎ 1981. 5. 2

명제 169 호

공무원교육원
지방행정사무관

김 지 국

지방공무원법 제 48 조 및 제 53 조
외 규정에 위배되어 동법 제 69 조
제 1, 2, 3 호에 의거 파면에 처함

<p>중구주외과 행정주사 임갑제</p> <p>국가공무원법 제 56 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동법 제 78 조 제 1 항 제 1, 2 호에 의거 전책에 처함. 마포구 근무를 명함</p> <p>영등포시민봉사실 행정주사보 김지철</p>	<p>◎ 1981. 5. 6 령제 171 호</p> <p>도시가스사업소 김우영 지방화공기사보</p> <p>지방공무원법 제 63 조 제 1 항 제 1 호의 규정에 의거 휴직을 명함</p> <p>서울특별시장</p>
<p>국가공무원법 제 56 조 및 제 61 조 규정에 위배되어 동법 제 78 조 제 1 항 1, 2, 3 호에 의거 감봉 3 월에 처함. 관악구 근무를 명함</p>	<p>◎ 1981. 5. 7 령제 172 호</p> <p>침소년과 지방행정주사보 김광배</p>
<p>중구사외과 지방행정서기 권순환</p> <p>지방공무원법 제 48 조 규정에 위배되어 동법 제 69 조 제 1 항 1, 2 호에 의거 감봉 6 월에 처함. 성동구 근무를 명함</p>	<p>부직을 명함. 보건사회국 근무를 명함</p> <p>서울특별시장</p> <p>◎ 1981. 5. 7 령제 173 호</p> <p>회계 2 과 지방행정주사보 김동희</p>
<p>중구사외과 지방행정서기보 양양승</p> <p>지방공무원법 제 46 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동법 제 69 조 제 1 항 1, 2 호에 의거 감봉 6 월에 처함. 서내문구 근무를 명함</p> <p>서울특별시장</p>	<p>원내 의하여 그직을 면함</p> <p>서울특별시장</p> <p>◎ 1981. 5. 15 령제 176 호</p> <p>감사원 감사주사 임창석</p> <p>서울특별시 진입을 명함. 지방행정주사에 임함. 서울운동장 근무를 명함</p> <p>서울특별시장</p>

◎ 1981. 5.13		명제 182 호	
성 명	발 명 부 서	호 봉	직 급
고종인	부 내 과	8 호봉	별정직 5 갑상당 (가정상담원)
정순옥	"	1 호봉	" (윤학여성선도지도원)
박금자	"	2 호봉	" (가정상담원)
성희석	"	1 호봉	" 5 을상당 (부녀상담원)
김혜숙	"	1 호봉	"
이주창	주 택 점 비 과	4 호봉	" 4 을상당 (항공판독사)
권구태	종합운동장건설본부	1 호봉	" 5 갑상당 (기계처리사)
박장수	한강안전관리대	4 호봉	" 5 을상당 (민방위훈련원)
최이대	"	6 호봉	"
김충남	"	3 호봉	"
김학만	"	4 호봉	"
전귀년	아 동 병 원	3 호봉	" 4 을상당 (복수교사)
배의숙	"	3 호봉	"
김경희	"	3 호봉	"
이명국	"	2 호봉	"
구영훈	종합종말처리사업소	5 호봉	" 5 갑상당 (공해측정기사)
양부원	경 산 국	6 호봉	" 4 을상당 (전산처리사)
최종성	"	4 호봉	" 5 갑상당

◎ 1981. 5.13		명제 183 호		서울특별시	
부 내 과	정 순 옥	강 동 구	박 동 열	강 동 구	박 동 열
별정직 5 갑가정상담원	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	별정직 5 갑부녀상담원	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	서울특별시	서울특별시
부 내 과	박 금 자	서울특별시	서울특별시	서울특별시	서울특별시
별정직 5 을부녀상담원	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				